

고시원규정

제정 1994. 07. 24.

4차 개정 2019. 06.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국가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된 상지대학교 고시원(이하 “고시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8.23.)

제2조(소재) 고시원은 교내에 둔다. (개정 2000.8.23.)

제3조(활동) 고시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각종 국가시험준비를 위해 필요한 특강실시, 정보제공 및 지도 상담 (개정 2000.8.23.)
2. 기타 위와 관련되는 활동

제4조(조직 및 임무) ① 고시원에는 원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8.23.)

② 원장은 고시원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시험준비를 위한 학습지도 및 상담을 한다.

③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0.8.23.)

제5조(위원회) ① 고시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시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8.23.)

③ **학생행복처장**과 직전 고시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00.8.23.) (개정 2019.06.25)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시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고시원 규정 및 운영준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임기) 고시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2000.8.23.)

제8조(고시원 구성) 고시원에는 사법시험반, 행정고시반, 공인회계사반, 공무원반, 기타 고시반을 둔다. (개정 2000.8.23.)

제9조(고시원생의 자격) 고시원생은 본교 재적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다만, 졸업생은 졸업 후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0.8.23.)

제10조(선발기준 및 방법) 고시원생은 매학기 초에 실시하는 소정의 선발 고사와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개정2000. 8.23.)

제11조(자격상실)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고시원생에 대하여 퇴실을 명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하고 학업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교내에서 실시하는 모의시험 성적이 기준점수에 미달한 경우
3. 운영준칙 및 고시원생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학습태도가 불량하여 타 고시원생의 면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00. 8. 23.)
4.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고시원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운영비 지급) 고시원의 운영비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개정 2000. 8.23.)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 이외의 고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원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준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